

■ 시험·인증 기술동향

# GCF 시험인증제도

임형수 / TTA 시험인증연구소 시험인증기획팀 선임연구원  
 김영태 / TTA 시험인증연구소 시험인증기획팀 책임연구원·팀장

## I.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의 일반적인 사항

### 1. 개요

Global Certification Forum(GCF)는 GSM 단말기의 상호운용성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GSM 사업자를 대표하는 GSM 협회와 단말기 사업자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현재 회원은 약 150개 전 세계 망 사업자, 35개 이상의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 50개 이상의 시험 장비 제조업체, 시험소, 기타 참관자를 포함한다.

GCF는 포럼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단말기의 인증을 담당하는데, 결과의 국제적인 인정과 채택을 통하여 중복되는 시험을 피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증 프로그램은 모든 GSM 주파수 대역과 다중 모드 단말기를 포함한다. 이것은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의무적 제도와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인증 프로그램과 시험은 단말기의 상업적 또는 품질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일부 시험은 사업자와 제조자

사이의 상업적 계약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새로운 요구사항과 시험들은 GSM Core Spec.이 되고, 시험이 표준 개발 조직에 의하여 제정되고, 입증된 시험 설비가 상업적으로 판매될 때 인증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 2. 도입 배경

GCF는 유럽 연합내에서 2000년 4월, 이전 강제적인 형식승인제도의 완화에 대응하여 발전되었다. 이것은 Radio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R&TTE) 규정의 발효와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TTE) 규정의 폐지에 뒤따른 것이다.

그러나 GCF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계획되었고, 현재 존재하는 지역 규제 인증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되었다. GCF는 시험의 중복을 피하여 시장에 진입시간을 줄임으로써 산업 전 분야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체와 망 사업자가 공동으로 GCF를 만들어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새로운 제품과 기능의

확인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GCF 인증 프로그램은 현재 GSM 850, GSM 900, GSM 1800, GSM 1900, EDGE에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출시될 후속 세대의 제품에 적용되도록 계획되었다.

### 3. 조직 구성

GCF는 GSM 협회 또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포럼은 GSM 협회, 포럼, 그리고 각 회원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한을 두고 GSM 협회내에 두고 있다. 포럼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사무국과 함께 Steering Group으로 구성된다. Steering Group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Working Group를 구성하며, 포럼은 포럼 참여를 선언한 모든 사업자와 제조업자 그리고 초청된 참관자에게 열려 있다.

#### 가. 회원

포럼 참여는 자율적이고 GSM 협회의 모든 회원들과 모든 GSM 단말기 제조자에게 열려있다. 포럼의 회원자격은 사무국에 완성된 참여 신청에 대하여 Steering Group의 승인이 난 후 사업자나 제조업자에게 주어진다. 승인이 나자마자 사무국에게 전해져서 인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GCF 회원자격과 참관자격을 위한 신청자는 업종, 주소, 기업명과 같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Steering Group 회의에 참석하며, GCF 사무국 직원은 모든 GCF 회원 웹사이트의 URL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나. 참관자(Obser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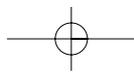
참관자의 자격은 GSM 단말기의 설계, 개발, 제조, 시험, 서비스 제공, 표준 그리고 요구사항 개발 등 사업자나 제조업자가 아닌 모든 관심이 있는 조직에 열려있다. 참관자가 되길 원하는 조직은 참관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은 승인을 위하여 Steering Group에 전달된다. 승인 즉시 사무국에 전달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인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진다.

GSM 단말기의 표준 또는 요구사항 개발에 관련된 업계 조직은 연락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모든 GCF 회의에 두 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연락책들은 조직의 일원 또는 Working Group 대표가 될 수 있고, Working Group 대표의 경우 GCF의 회원이어야 한다.

참관자는 회원 공개 인증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문서와 회의보고서 등을 얻고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관자는 의장과 부의장의 공동의 결정에 의하여 초대되어서 Steering Group과 Working Group에 참석할 수 있고, 토론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작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참관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포럼의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 다.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서신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매해 9월 1일 이전에 통지를 주면 그 해 마지막 달까지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의 마지막 달까지 계속되게 된다. 회비를 지불한 탈퇴 회원은 GCF 웹사이트에서 GCF 인증을 유지할 자격이 주어지며 인증받은 모델과 관련된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시험 · 인증 기술동향**

**라. 일반 참석자(Guests)**

의장과 부의장은 때때로 SG, WG, 또는 다른 회의에 일반 참석자가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일반 참석자는 그들이 참석한 회의 목적 그리고 그들의 초대된 회의의 일부와 관련되어 접근한 문서나 다른 정보에 대하여 Non Disclosure Agreement(NDA)에 서명하여야 한다.

일반 참석자는 회의 문서 이외의 어떠한 정보에도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비공개 GCF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다.

**마. 의장 /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사업자 참가자에 의하여 선출된 사업자 회원과 제조업자 참여자에 의하여 선출된 제조업자 회원사이에서 매년 교대된다. 부의장은 새로운 부의장 선출과 동시에 의장을 승계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서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속에서 일하게 된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시 의장을 대신하게 된다.

의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Steering Group 회의의 공식적 초대와 진행
- 의사록의 승인
- Steering Group의 결정에 따라 3자에게 포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공식적 발표
- 사무국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바. Steering Group**

포럼의 모든 회원은 포럼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인 Steering Group의 회원이다. Steering Group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재정과 예산 문제

- 회원자격과 참관자 문제
- 모든 정책 문제
- 기술적 요구사항, 기준, 시험에 대한 승인
- 사무국의 임명과 관리
- 지정된 과업에 대한 Working Group 임명 등

Steering Group은 매년 2번 개최될 것이다. 다른 Steering Group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과 부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모든 회원에 대한 초청은 적어도 2주일 전에 서면으로 의장에 의하여 보내지고 회의에서 토론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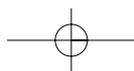
Steering Group의 결정은 우선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Steering Group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제는 투표에 부쳐진다. 제조업체와 사업자 대표자들은 동일한 투표권(50/50)을 가진다. 결정은 Steering Group에, 투표를 위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제조업체와 사업자 양쪽 모두 50% 이상 찬성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의장과 부의장은 Steering Group 결정에 있어 동률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사업자와 제조업체 모두 각각 최소 5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결그룹은 Steering Group의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참석한 사업자 대표자들은 참석한 제조업체 대표자들에게 할당된 만큼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회원 이외에 참여신청을 제출한 제조업체와 사업자들은 Steering Group의 승인이 철회될 때까지 투표권이 제한된 참석자로서 Steering Group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사. 사무국**

사무국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규 고용되거나 계약 채



용될 수 있다. 사무국은 의장과 부의장의 지휘에 따라 일하게 된다.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Steering Group에 의하여 제시되는 정책에 기반하여 Working Group에게 지침 제시
- 포럼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GSM Association과 참여자들과 접촉
- 의장과 부의장의 지휘아래 운영원칙에 따라 포럼의 일일 업무와 활동을 관리
- Steering Group이 요구하는 지원을 제공

#### 아. Working Group

Working Group은 특정한 과업을 위하여 Steering Group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steering Group에 의하여 지시되어지는 정책의 세부적인 수행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에는 포럼의 기술적 요구사항의 개발과 유효성 검증 등을 포함한다. Working Group은 만장일치로 제안서(proposal)를 작성하고 Steering Group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한다. 각 Working Group은 Working Group을 대표하고, 회의 사회를 맡을 의장을 선출한다.

#### 4. 회비

GCF는 비영리단체로 운영된다. 연 회원 회비는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되어진다. 입회비 또는 회의 참가비와 같은 다른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회원은 언제나 GCF를 탈퇴할 수 있고 추가적 비용이나 벌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각 회계연도(1월부터 12월)의 GCF 운영예산은 Steering Group에 의하여 승인받고 포럼을 대신해 GSM Association에 의하여 관리되어진다. GCF 연 예산은 GSM Association과 제조업체 회원이 반반씩

똑같이 부담한다.

각 제조업체 회원은 연 회원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회비는 GCF 연 운영예산의 50%를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회원으로 등록된 제조업체의 수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새로운 제조업체 회원은 그들의 회원자격이 Steering Group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을 때 회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언제 회원자격이 승인되었는지에 달려있다. 1월에서 3월 사이는 회비의 100%, 4월에서 6월 사이는 회비의 75%, 7월에서 9월 사이는 회비의 50%, 10월에서 12월 사이는 회비의 25%를 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신규 회원의 추가적인 회비로 인해 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회계연도 말에 예산이 남으면 다음 연도 회비에 있어서 모든 제조업체 회원은 일정정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II. GCF 인증

### 1. 개요

GCF 인증은 GCF 시험 요구조건이 각 국가의 강제 인증제도의 주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인증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GCF는 단말기의 상호 운용성과 기능을 시험한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단말기가 전 세계 디지털 무선 네트워크에서 정확히 작동하고, 표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조되고, 시험되었다는 신뢰감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인증된 단말기가 네트워크에서 정확히 작동하고, 고객에게 끊임없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점을 얻는다.

GCF 인증 단말기는 합의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갱신

되는 시험 항목에 대하여 시험되어진다. 시험 항목은 국제 표준제정 기구에 의하여 개발되어지고 GCF Agreement Group에 의하여 유효성이 입증된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

## 2. 인증 절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포럼의 회원이 된 이후 단계로서 Quality Qualified가 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 프로세스는 제조업체가 매일 GSM 단말기의 설계, 개발, 제조의 과정에서 승인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선언을 포함한다.

제조업체는 GCF-CC 문서와 다른 관련된 문서에 정의되어진 인증기준에 부합되도록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자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하청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

제조업체는 독립적으로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제품이 인증되었다는 것이 선언되고, 웹사이트에 등록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험 프로세스와 사무국에 공지를 관리한다. 제조업체는 단말기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사무국에서 통지할 때까지 일반에 공지해서는 안된다.

적합성에 대한 증거는 제조업체에 의하여 수집되고 유지되는 Compliance Folder에 기록되어야 한다. 적합성 증거의 일부는 다양한 상업망에서 제조업체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Field Trial들의 기록들로 구성된다.

### 가. Quality Qualified Status

제조업체는 ISO 9000 시리즈, 그와 동등한 표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갖추고,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목표가 포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했을 때 Quality Qualified 상태를 선언한다.

일반적으로 품질 시스템은 현존하는 인증조직으로부터 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3자 기관은 특정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요구조건에 정의된 것과 같이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Assessment Compliant Status

제조업자는 단말기가 포럼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 자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의 도구들을 구비하였을 때 Assessment Compliant Status를 선언한다. 이러한 시험 수단은 제조업체의 판단에 따라 제조업체 자체시설 또는 제3자 시험소 또는 둘의 적당한 조합에 완비되어야 한다.

### 다. Terminal Certified Status

Quality Qualified와 Assessment Compliant status를 획득한 제조업자는 단말기가 관련된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말기가 인증되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GCF-CC에 있는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단말기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관련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고 요구되어지는 Field Trial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각 단말기는 제조업자에 의하여 인증되었다는 것이 선언된다. 이러한 선언은 포럼의 기술적 요구조건에 기반하여 코어 스펙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Terminal Certified Status 선언의 범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 특정 단말기 모델안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된 특성
- 선언일 당시에 유효성이 검증된 시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특성
- 제품이 제조업자에서 떠난 후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추가된 특성

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하여 일어난 변화는 기록되고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된다. 인증된 단말기에 대한 의무적 표시가 요구되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 라. Compliance Folder

제조업자는 선언 프로세스를 통하여 진척되어진 각 단말기에 대한 Compliance Folder를 유지해야 한다. Compliance Folder는 여러 가지 추적 가능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Compliance Folder는 제조업체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 안에서 관리되는 제조업체의 기업문서 세트이다. 모든 Compliance Folder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Compliance Folder는 적용된 시험, Field Trial, 변경 정보의 결과들을 포함한다. 분쟁의 경우, 인증되어진 단말기와 관련된 Compliance Folder에 포함된 관련 정보들은 관련된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다.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되어진 것과 같이 제조업체의 ISO 9000 인증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인증된 단말기의 Compliance Folder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연례 감사가 있다.

#### 마. Evidence of Conformity

단말기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의 각각에 대하여 제조

업체는 Compliance Folder 안에 각 인증기준에 관한 적합성을 만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할 것이다.

시험 결과는 Compliance Folder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GCF-CC에 언급되어진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는 대안 방법이 관련된 시험 목적에서 기대되어지는 것과 같이 인증기준에 대한 단말기의 적합성에 있어서 적어도 같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Compliance Folder에 문서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Compliance Folder는 단말기가 인증되었을 때의 유효한 GCF-CC 버전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인증된 단말기가 변형되었을 때, 제조업체는 포럼의 적절한 기술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바. Field Trial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제조업체는 단말기가 이용하는 각 주파수 대역과 기술 모드 그리고 주요 장비업체의 기반구조를 대표하는 다섯 개의 Field Trial Qualified 네트워크에서 Field Trial을 수행하게 된다. 다섯 개의 Field Trial Qualified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경우, trial은 가능한 최대의 네트워크와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다중대역 단말기는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해 적어도 다섯 네트워크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다중대역에서 수행되어지는 trial은 다중대역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각 대역에 대하여 최소 5번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중모드 단말기는 단말기의 기술 모드를 지원하는 적어도 다섯 다중모드 네트워크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다중모드 네트워크에서 수행되어지는 Trial은 다중 모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각 기술 모드에 대하여 적어도 5번이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 인증 기술동향**

일정 범위의 운영 네트워크와 단말기의 상호운용을 수립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 Field Trial들은 제조업체의 축적된 경험의 기반하에서 정의되고 갱신되어진다. 제조업체는 또한 피드백 정보가 접근가능할 때 사업자나 GCF 회원 조직으로부터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권고되어진다. 제조업체에 의해 선언되어진 것과 같이 단말기의 모든 특성은 성공적으로 시험되어질 것이다. 제조업체의 판단에 따라 모든 특성이 모든 네트워크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특성이 모든 네트워크에 시험되어질 필요는 없고, 특정 특성의 시험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여러 번 시험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영에 있어서 예외는 조사되어져, 적절한 행동이 취해져야 하고 결과와 행동들이 Compliance Folder에 기록되어져야 한다.

**사. 적합성 선언**

포럼의 기술적 요구조건에 따른 제조업자의 성공적인 시험소 시험과 field trial의 성공적 완수를 하자마자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 문서를 사용하여 단말기 인증을 선언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단말기가 인증 웹사이트에 인증받은 것으로 등록된 후에 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단말기가 인증되었다는 공지는 사무국이 서면으로 통지받을 때까지 제조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아. Acceptance of Declarations**

Quality Qualified, Assessment Compliant 또는 Terminal Certified에 대한 완전한 선언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은 후, GCF 사무국은 선언이 완벽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만일 선언이 완벽하다고 판단되

면 선언은 채택된다. 제조업체는 선언의 접수 후 일반적으로 5일 최대 10일안에 선언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GCF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어떤 정보가 빠져있거나 완전하지 못하면, 제조업자는 선언의 접수 후 일반적으로 5일 최대 10일안에 서면으로 추가적 정보를 요청받는다.

수정 또는 갱신된 선언을 받자마자 GCF 사무국은 선언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 만일 완벽하다고 판단되면 제조업체에게 추가적 정보가 도착한 후 일반적으로 5일 최대 10일안에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GCF 사무국은 GCF 사업자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선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알릴 것이다. 사무국은 단말기에 대한 인증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URL을 GCF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 문제해결**

상호운용성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연관된 당사자들은 그들의 상업적 합의에 기초하여 상호 대화를 통하여 즉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유효성이 입증된 시험에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두 당사자에 의하여 동의된 인정 시험소에 의하여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3자 기관의 참여는 두 당사자의 상호 협정을 필요로 한다. 두 당사자는 3자 기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5 근무일 안에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고, 시험의 비용은 진 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독립성과 기밀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결 프로세스가 20 근무일 동안 지체된다면 어떤 기관도 중재 프로세스를 요청하

는 것이 허락된다. 인정 시험소는 합당한 비용과 기간에 기반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지정되어질 것이다. 시험소는 제기된 이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것이고 진 기관은 시험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GCF-CCR/CCV의 공포된 버전에 의하여 확인된 유효성이 확인된 시험만이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다.

추가로 GCF-CCR/CCV의 공포된 버전에서 유효하다고 언급되었으나 선언의 시점에서 down-grade된 시험들은 문제해결과 관련이 없다.

반대로 GCF-CCR/CCV의 공포된 버전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되었으나 선언 시점에서 재조정된 시험은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다. 시험 오류는 제조업체에 의하여 사무국에 즉시 통지되고, 사무국의 인증 웹사이트에 시험 오류를 공지할 것이다. 사무국은 만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험 오류가 인증 웹사이트로부터 제거되어지면 제조업체로부터 새로운 또는 수정된 선언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

GCF-CC 자발적 시험에 대하여 제3자가 시험의 오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증은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이것에 대한 공지가 인증 웹사이트에 공지된다.

GCF-CC 규제적 시험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9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된 선언을 하던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 기관의 관여를 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 만일 규제 당국이 규제 승인을 취소하고, 그것에 대해 제조업자가 법률적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GCF에 통지하지 않으면 인증은 취소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되고, 법률적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GCF 웹사이트에 갱신된다.
- 만일 규제 당국이 단말기가 GCF-CC 규제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수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면, 제조업체는 사무국에 결정된 실행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된 선언은 규제 당국의 실행계획에 규정된 일정 안에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 만일 규제 당국이 일정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실행은 시험 오류의 발견후 90일 이내에, 또는 규제당국의 실행 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 만일 규제 당국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 시험 오류는 규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조업체는 시험 오류의 발견후 90일 이내에 또는 규제 당국의 실행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수정된 선언을 실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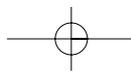
만일 제조업체가 90일 안에 규제 당국의 관여를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고, 90일 안에 수정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인증은 취소된다. 만일 규제 요구사항과 GCF 요구사항 사이에 충돌이 있고 동시에 두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규제 요구사항이 우선하고 GCF 요구조건에 대한 오류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만일 당사자들이 문제가 특별한 해결 프로세스를 필요 한다고 생각하면,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해결된다. 시험 스펙 제정자 또는 유효성 평가그룹의 기술적 전문가가 토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제조업체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언제든지 인증 선언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약어표>

EDGE - Enhanced Data rates for GSM Evolution



시험 · 인증 기술동향

GCF – Global Certification Forum  
 GCF-CC – Global Certification Forum – Certification Criteria  
 GCF-CCR – Global Certification Forum – Certification Criteria – Part 1, Regulatory  
 GCF-CCV – Global Certification Forum – Certification Criteria – Part 2, Voluntary  
 GSM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Certification Cr  
 NDA – Non Disclosure Agreement  
 R&TTE – Radio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SG – Steering Group  
 TTE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URL – Uniform Resource Locator  
 WG – Working Group

<참고 문헌>

GCF, GLOBAL CERTIFICATION FORUM Principles Document(2003. 10) ver. 3.15.3  
 GCF, GLOBAL CERTIFICATION FORUM Application Procedures(2003. 10) ver. 3.14.0  
 GCF, GLOBAL CERTIFICATION FORUM Organization Procedures(2003. 10) ver. 3.13.0  
 GCF, GLOBAL CERTIFICATION FORUM Operating Burget(2003. 10) ver. 3.12.0 **TTA**

